

# 예 산 총 칙

2016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172,523,698	35,175,711
일반회계	969,017,313	29,070,519
특별회계	203,506,385	6,105,192
공기업특별회계	134,490,487	4,034,715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531,820	45,955
상수도사업특별회계	75,689,884	2,270,697
하수도사업특별회계	57,268,783	1,718,063
기타특별회계	69,015,898	2,070,477
의료급여기금조성특별회계	4,453,222	133,597
수질개선특별회계	8,041,502	241,245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13,647,179	409,415
기반시설특별회계	457,620	13,729
기반시설부담구역특별회계	92,593	2,778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2,145,150	64,355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6,497,951	194,939
주택사업특별회계	99,378	2,981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30,662,420	919,873
지하수특별회계	2,918,883	87,566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2016년도 계속비 사업은 별첨 "계속비조서"와 같다.

제 4 조 2016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20,0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2,242,500천원으로 한다.